

영등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6.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盧 相 沃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호로 2010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9월 7일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임.

2. 제정(제안)이유

문화예술 전문화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더불어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안 제3조).

나. 재단의 사업(안 제4조).

- 1) 영등포아트홀 운영, 관리.
- 2) 영등포구민회관 및 대림·문래·선유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관리.
- 3) 문화예술 관계 자료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5)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 6)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다. 기본재산의 조성(안 제5조).

1) 구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2) 구는 재단의 설립,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

라. 정관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임원에 대한 사항(안 제7조).

1)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등 총16명 이내로 구성.

2)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함.

3) 정관에 임원의 임면과 임기를 정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구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4)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로 구분.

○ 당연직 이사에는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 국장으로 함.

○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5)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

6)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

바. 임원의 직무(안 제8조).

1)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 총괄.

2) 감사는 회계감사를 하고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사. 이사회(안 제9조).

1)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

2)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3) 재적이사 과반수로 개의하고 과반수로 의결.

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12조).

○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자. 재단 운영재원(안 제13조).

- 재단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구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가능.

차. 결산서의 제출(안 제14조).

-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감사 후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제출.

카. 보고, 검사 등(안 17조).

- 필요한 경우 재단에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구에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사하여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2) 「문화예술 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나.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서울시 및 5개 자치구)

- 서울시('03), 중구('04), 구로구('07), 마포구('07), 강남구('07), 송파('10).

- ※ 전문공연장 구 직영 운영 : 광진구(나루아트센터), 노원구(노원문화예술회관), 금천구(금나래아트홀).

다. 예산조치 :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시행.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안 이유와 같이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문화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 최근 우리구 영등포아트홀, 선유·대림·문래 정보문화 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경방타임스퀘어내 공공문화복지 공간 조성, 문래동 철재 상가내 100여개의 자생적 예술인 단체들의 활동 등 다양한 문화 예술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의 융화, 문화수익 창출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의 문화적 성향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였지만 문화전담 전문 인력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행정에 순환보직인 소수의 행정공무원이 시설운영, 콘텐츠 개발,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등 관 주도형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예술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면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 법인의 출연이 대두되고 있음.
- 영등포문화재단의 설립 및 조례 제정 근거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문화재단의 주 사업 목적과 범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경영상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초기 자본금 출연과 재단이 완전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기 전까지의 운영비, 인건비, 추가 부담경비 및 중장기적으로 총 200억원

출연금 조성 등,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문화재단 사업실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다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타 우수 재단의 공연수익 창출, 문화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 및 후원·협찬 마련 등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재단의 설립목적은 영등포아트홀이나 도서관의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구민의 문화예술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존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전문예술인과의 커뮤니티 형성 등 상호 보완 및 협력 체계 구축과 더불어 컬처노믹스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단의 목적이나 사업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재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의 설립 및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 문화(Culture)+경제(Economics)
문화와 산업의 창조적 융합, 문화의 상품, 문화를 통한 창의적 차별화 등 비즈니스 차원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이며 세계적인 국제도시와 공공기관도 컬처노믹스를 반영하고 있음(성공사례 : 보령 머드 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 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